

의안번호	제 209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9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육성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뿌리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주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뿌리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뿌리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신설(안 제5조)
-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고, 비상설 형태로 전환(안 제6조)
- 도지사가 추진하는 뿌리산업 육성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7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뿌리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뿌리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뿌리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뿌리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뿌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의 운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를 “수당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뿌리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신상품 개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기술개발 지원
2. 뿌리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
3. 뿌리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뿌리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인증·기업홍보 및 판로 등 지원
5. 뿌리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6.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7. 국내외 산학연 교류·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도의 책무)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4.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첨단화,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 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제5조(뿌리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뿌리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뿌리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 ②·③ (생략)

<신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
--.

1. ~ 4.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뿌리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뿌리산

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뿌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육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② (생략)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3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제9조(회의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

- 수당 및 -----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뿌리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뿌리산업 신상품 개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기술개발 지원
 2. 뿌리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
 3. 뿌리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뿌리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인증·기업홍보 및 판로 등 지원
 5. 뿌리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6.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7. 국내외 산학연 교류·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

<신 설>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18조(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실행계획과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삭 제>

체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기관

관련법령 발취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뿌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뿌리산업 지원사업 대상의 명확화와 뿌리산업육성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뿌리산업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14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뿌리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나. 추계 결과

- 뿌리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 1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